

[별표 2] 사외이사 활동내역

I. 제 19기 제 5차 정기 이사회

: 2014년 6월 20일 오후 5시, 안건통지일 2014년 6월 13일

항목	사외이사 활동내역				비고
	리지아 토레스	임병철	전영교	빈센트 카멜링크	
1. 사외이사 성명	리지아 토레스	임병철	전영교	빈센트 카멜링크	-
2. 참석여부 및 (불참)사유	참석	참석	참석	참석	-
3.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	-	-	-	-	-
4. 의결안건					
가. 제 1호 안건 (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)	찬성	찬성	찬성	찬성	가결
나. 제 2호 안건 (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)	찬성	찬성	찬성	찬성	가결
다. 제 3호 안건 (준법감시인 선임의 건)	찬성	찬성	찬성	찬성	가결
라. 제 4호 의안 (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)	찬성	찬성	찬성	찬성	가결

II. 이사회의 연간 누적 활동내역 (2014.01 ~ )

사외 이사명	이사회		이사회내위원회				활동시간	
			감사위원회		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			
	개최	참여	개최	참여	개최	참여	목표	실적
리지아토레스	5	5	-	-	-	-	-	-
임병철	5	5	2	2	1	1	-	-
전영교	3	3	1	1	-	-	-	-
빈센트카멜링크	5	2	2	2	1	-	-	-

### Ⅲ. 사외이사 대한 교육·연수에 관한 사항

\* 당사 사외이사는 모회사인 (주)신한금융지주 및 BNP 파리바의 임직원으로서, 해당 사외이사는 당사 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

### Ⅳ.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여부

심사항목	충족여부	충족 이유
1. 소극적 요건	충족	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자격(자본시장법 제 24 조)에 관한 결격사유는 없으며, 사외이사 자격조건(자본시장법 제 25 조 제 5 항)과 관해서는 일부 사외이사에 한해 계열회사 상근임직원(4 호)에 해당하는 결격요건이 있으나, 위 내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51 조 제 2 항 2 호 라목 후단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 39 조 제 2 항에 따라 겸직 가능함
2. 적극적 요건	충족	금융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 2-3 조제 3 항 충족

\* 당사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됨

### Ⅴ.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등에 기부금등 지원내역

\* 당사 사외이사는 모회사인 (주)신한금융지주 및 BNP 파리바의 임직원임